

빅데이터를 활용한 월간 워드클라우드 및 주요 상담사례(25년 11월)
 - 생성형 AI로 창작물을 만드는 것은 저작권법에 문제가 되나요? -

2025. 12. 26. / 저작권상담팀(☎ 1800-5455)



공유마당(<https://gongu.copyright.or.kr/>)의 '횡성군, 횡성한우체' 글꼴로 생성
 (단어의 크기가 클수록 월간 질의가 많이 온 것을 의미함)

□ 용어 정의

- (월간 워드클라우드)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에서 한 달 동안 상담한 내용 중 가장 많이 언급된 저작권 관련 단어 100개를 추출하여 시각적으로 이미지화
- (월간 주요 상담사례) 저작권상담 내용 중 주요 사례를 요약 정리

<저작권 종류별 및 기타 핵심 단어 순위>

순위	저작권 종류별	기타
1	영상	등록
2	캐릭터	이용
3	사진	계약
4	음악	침해
5	프로그램	복제

*'저작권, 저작물'은 순위에 든 종류를 포괄하는 단어로 순위에서 제외

< 11월 주요 상담사례 >

○ (제작) 생성형 AI로 창작물을 만드는 것은 저작권법에 문제가 되나요?

- 이용 허락받지 않은 타인의 저작물을 생성형 AI에 입력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.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자는 생성형 AI 산출물을 만들어 내기 위해 입력하는 텍스트나 이미지, 오디오 등의 데이터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침해를 유도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.
-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영리·비영리, 전부·일부 이용을 불문하고 저작권자에게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고, 이용자는 그 이용 허락의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이용해야 한다(저작권법 제46조). 생성형 AI 산출물과 관련한 것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며, 저작권 침해의 성립 요건 또한 일반적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판단기준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.
- 즉, AI 산출물이 기존 “저작물”을 인식하고, 이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것인지(의거성), 무단으로 이용된 부분이 기존 저작물이 같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지(실질적유사성) 등 각 상황을 고려하여 저작권 침해 요건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. 즉 침해 여부 등은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판단하므로,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자는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거나, 결과물이 타인의 저작물과 동일하게 혹은 유사하게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거나, 침해를 유도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.
- 다시 말해,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, 침해하는 산출물을 유도하는 형태로 프롬프트를 입력해서는 안 될 것이다. 예를 들어 생성형 AI를 이용하면서 “뽀로로” 등 유명 캐릭터를 그대로 입력 혹은 비슷한 결과물을 유도하는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다. 또한 홍보 포스터 제작을 위해 생성형 AI에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를 입력한 후 자사 제품에 맞게 수정하여 홈페이지에 이용하는 경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침해를 유도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문제가 될 수 있다.
- 결론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명령을 내릴 때는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에게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. 저작권이 만료된 “만료저작물”이나 저작자기 미리 이용을 허락해놓은 “자유이용허락표시 저작물”, “기증저작물” 등 저작권 처리가 완료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.¹⁾

1) 한국저작권위원회 ‘공유마당’은 만료저작물, 기증저작물, 공공저작물, 자유이용허락표시 저작물 등을 모아둔 누리집으로,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만 있다면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.

- 추가로, 이용하는 생성형 AI 서비스의 이용약관 등 관련 규정을 확인하여 해당 조건 내에서만 이용해야 할 것이며, 불필요한 분쟁 예방을 위해 만들어진 결과물에 생성형 AI 이용사실(출처, 창작사실 등)에 대한 표시를 함께 해두는 것을 권장한다.

◆ 참고 안내서

1. 위원회 누리집>자료> 발간자료>조사·연구>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(국/영문)
※ [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\(국/영문\) 바로가기](#)
2. 위원회 누리집>자료>발간자료>조사·연구>생성형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분쟁예방 안내서
※ [생성형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분쟁예방 안내서 바로가기](#)
3. 위원회 누리집>자료>발간자료>조사·연구>생성형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등록 안내서
※ [생성형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등록 안내서 바로가기](#)

< 시스템(챗봇)에 가장 많이 묻는 질의 >

순위	질의
1	저작권 등록 문의
2	저작권법 상담사례
3	등록 절차
4	신규 권리 등록
5	저작권(일반저작물) 등록 신청 구비서류가 무엇인가요?
6	저작권(이용 일반 및 제한)
7	어떤 저작물이 저작권등록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8	저작물 조회
9	전화상담 운영시간
10	저작권교육

* 질의에 대한 답변은 챗봇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* 챗봇: <https://chatbot.gov.kt-aicc.com/client/GCL-01-C-00000221-0001/chat.html>

(사)세종대왕기념사업회에서 개발한 ‘문화체육관광부 도움체’를 사용하였습니다.
공유마당(<https://gongu.copyright.or.kr>)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

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월간 워드클라우드 및 주요 상담 사례(25년 11월) 저작물은 "공공누리" 출처표시-상업적 이용금지-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